

자와 동행하거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열람 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CCTV 사용 제한 등 운영자의 금지사항-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 3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는 경우)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4. 종사자 근로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의 행위(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인근 경찰서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
5. 시설 외부에서 CCTV 영상정보를 열람·모니터링 하는 행위(cctv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시설 외부에서 영상정보를 열람,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 되는 행위)
6.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개인 식별 가능한 CCTV 영상 포함)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1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